

선암사 소유권 분쟁, 항소심도 태고종 승소

광주고법 “조계종선암사 실제 존재하지 않아...말소등기 이행하라” 50여년 소유권 다툼...태고종 사실상 완승에 조계종 거센 반발 예고

한국불교태고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이 50년 이상 소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순천 선암사의 사찰 건물과 부지, 조계산 임야 등 일체는 태고종 소유 부동산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등기 명의는 50여년 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 등재돼 있으나 조계종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으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태고종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불교계 두 종단이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법원과 사찰 안팎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태고종 측이 사실상 완승하면서 조계종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제1·2심사부(부장판사 이수영)는 7일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와 운모씨를 상대로 낸 ‘등기명인의 표시변경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운모씨(등기 당시 조계종선암사 주지)에게 조계종선암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 2건과 건물 1건 등 총 3건의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이행 대상 부동산 3건은 선암사 대웅전을 비롯한 20여개의 사찰 건물(건물 1건)과 사찰 부지 8086평(토지1), 사찰 주변 임야인 조계산 250만평(853정, 토지 2)이다.

선암사는 대치측 승려들이 주축이 된 한국불교태고종이 1970년 1월 창단된 지 9개월여 뒤인 1970년 10월 태고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뒤, 1971년 사찰건물과 토지 등을 태고종 명의로 등기했다. 그런데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 측은 박정희 정부 시절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선암사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사실증명원을 내세워 1972년 9월 조계종 측 소유로 변경 등기했다.

이후 등기상으로는 조계종 사찰이지만 사찰 내부는 태고종 승려들이 점유한 형태가 수십 년간 이어졌다.

이러 순천시가 사찰 부지에 세운 ‘전통차 체험

관’ 소유권에 대한 두 종단의 다툼이 시작되면서 사찰 재산 전체를 둘러싼 소송이 2014년 시작됐다.

원고 측은 “선암사는 원고가 소속된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사찰로서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하면서 종교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도 당초부터 원고측 소유이거나 신축한 건물이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조계종 측은 1972년 9월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며 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소유권 등기 명의인이자 피고인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갖췄느냐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전래사찰인 선암사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찰이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 재산이 있고,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며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인용하면서 ‘조계종 선암사의 실제 없음’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계종 측이 1965년 선암사를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건물 및 제1, 2 토지를 점유하거나 관리하지 못했고, 소속 신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조계종 측이 임명한 선암사 주지와 승려들이 선암사 경내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종교의식을 치러왔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전래사찰인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 관계를 형성한 원고(태고종선암사)로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와 선암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전래사찰로서의 선암사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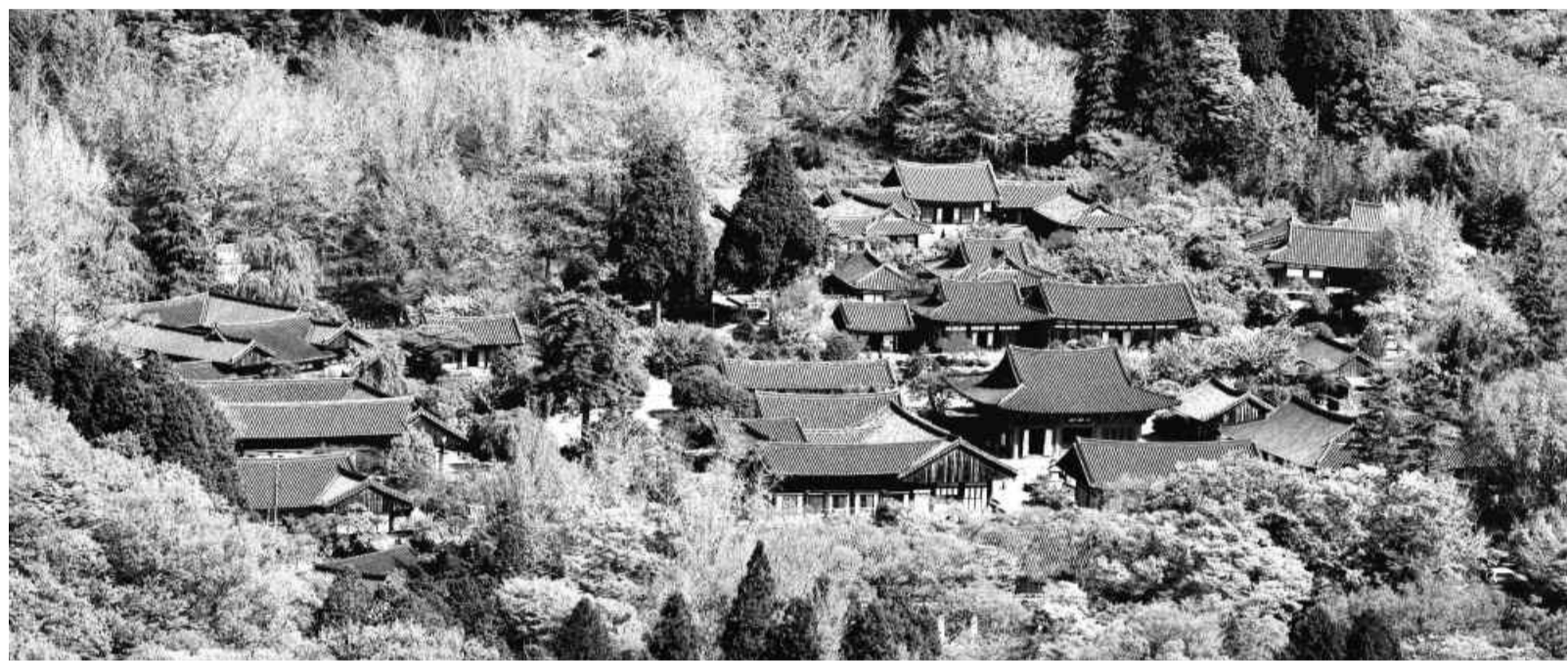
정한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운모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를 상대로 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및 표시변경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는 “조계종선암사는 실체가 없어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인 광민법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원고(태고종)측 일부 승소나 실질적으로는 선암사의 사찰과 부지, 조계산 등 일체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태고종의 완승”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조계종선암사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본만큼, 조계종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자격도 없게 된 것이다. 1970년대 초 선암사 등기를 수행한 운모씨가 결심하지 않으면 상고심도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의뢰인들과 상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국불교태고종과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소유권을 놓고 50년 이상 분쟁 중인 순천 선암사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경매 기일 연기해 줄게” 금품 받은 변호사 집유

법원 경매계 직원에게 손을 써 경매 기일을 연기 해주겠다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법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2017년 1월 광주지법 경매계 직원을 통해 광주 모 장례식장 경매 절차를 연기해 주겠다고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7년 2월 B씨와 공모해 장례식장 매각 기일을 연기해준 대가로 운영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았고, 또다른 재판에서 위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 14일 경매 기일은 연기됐으나 A변호사가 법원 경매계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A변호사가 법원 경매계 직원을 통해 경매 기일을 연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장례식장 운영자를 속일 목적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급받은 1억원은 장례식장 운영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금 업무를 보면서 제3자에게 변제한 것일 수도 있다며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 판사는 “A 변호사는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재판기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위증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로나 통합 의료기관 위치 등 행안부 ‘생활안전지도’서 제공

행정안전부는 생활안전지도 웹사이트(www.safemap.go.kr)와 앱에서 폭염·호우 등 재난안전 예방정보,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에 맞춘 통합(윈스톱) 진료기관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 신규 서비스를 한다고 7일 밝혔다.

부처별 정보를 통합해 물놀이 안전, 식중독, 온열질환, 냉방기 화재, 감전 사고, 1개월 날씨전망, 해양기상 등의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 환자가 쉽게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윈스톱 진료기관 정보를 서비스한다.

아울러 둔치주차장, 줄음شط터 등 6종 2만곳의 사물주소(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를 반영해 긴급상황에서 구호·구급 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물주소를 반영하면 시설물에 대한 주출입구와 진출입로가 안내돼 최단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국가지점번호관 조회 서비스 신설로 등산로 및 해안가 등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에서 조난사고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전남 경찰들 삭발식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전남지역 경찰들이 삭발을 했다.

전남 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청 경유회는 7일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독재시대의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징계권을 이용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추가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 할 것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한기민 전남 재향경우회장과 최철홍 목포경우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을 하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는 환영하지만 검찰공화국도 모자라 경찰까지 장악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경찰의 상부에 조악한 기능을 신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섬진강서 실종된 낚시객 숨진 채 발견

곡성경찰은 7일 오후 2시 40분께 곡성군 죽곡면 하한리의 섬진강변에서 낚시객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8시 50분께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인근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며, 실종 18시간만에 소방 드론으로 A씨를 찾아냈으나 이미 숨져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처음 낚시하던 위치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2m 50cm 깊이의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으며,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다. 현장에서 범칙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순천에 거주 중인 A씨는 6일 오후 2시께 지인 B씨와 함께 낚시를 즐기러 섬진강변에 찾았다.

두 사람은 200여m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아 낚시를 한 뒤 오후 8시에 다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A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B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가 강물에 들어가 낚시를 하다 미끄러지면서 번을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